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74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32
1. 국가별 가당음료 과세제도의 세부 운영 사례 비교	32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4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30.
- (3) 회 부 일 : 2026. 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제23조의4·제23조의5·제23조의6 신설 등).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5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3.
- (3) 회 부 일 : 2026. 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이른바 ‘설탕세’)을 부과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현행	김선민의원안	이수진의원안
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第2條(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를 말한다.	第2條(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말한다.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부담금</u> <u><신설></u>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담배부담금</u> 2. 제23조의4제1항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담배부담금</u> 2. 제23조제2항의

[illegible]

1. ~ 9. (생략) <u><신설></u>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가당음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u> <u>1.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1,000원</u> <u>2.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당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u> <u>3.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당 3킬로그램 초</u>
--	-------------------------	---

과 5킬로그램 이
하인 경우: 100리
터 당 3,500원

4.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5킬로그램 초
과 7킬로그램 이
하인 경우: 100리
터 당 5,500원

5.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7킬로그램 초
과 10킬로그램 이
하인 경우: 100리
터 당 8,000원

6. 첨가당 함량이 가
당음료 100리터 당
10킬로그램 초과
13킬로그램 이하
인 경우: 100리터
당 11,000원

7.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3킬로그램 초
과 16킬로그램 이
하인 경우: 100리
터 당 15,000원

② <u>제1항에 따른</u> <u>제조자 및 수입판</u> <u>매업자는</u>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제 조장 또는 보세구 역에서 반출된 담 배의 수량과 산출 된 부담금의 내역 에 관한 자료를 다 음 달 15일까지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u>제2항에 따른 자</u> <u>료를</u> 제출 받은 때 에는 그 날부터 5일	② ----- ----- ----- ----- ----- ----- <u>담배부담금</u>----- ----- ----- ----- -----. ③ ----- ----- ----- -----	8. <u>첨가당 함량이</u> <u>가당음료 100리터</u> <u>당 16킬로그램 초</u> <u>과 20킬로그램 이</u> <u>하인 경우: 100리</u> <u>터 당 20,000원</u> 9. <u>첨가당 함량이</u> <u>가당음료 100리터</u> <u>당 20킬로그램을</u> <u>초과한 경우: 100</u> <u>리터 당 28,000원</u> ③ <u>담배제조업자등</u> <u>또는 가당음료제조</u> <u>업자등(이하 “제조</u> <u>업자등”이라 한다)</u> <u>은</u>----- -----<u>담배 또는</u> <u>가당음료의 수량 또</u> <u>는 용량과 산출된</u> <u>담배부담금 또는 가</u> <u>당음료부담금(이하</u> <u>“국민건강증진부담</u> <u>금”이라 한다)</u>--. ④ ----- --<u>제3항</u>----- ----- -----
--	--	---

-----담배부담-----
금-----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조업자들은 제4
항에-----

⑤ -----
--- 담배부담금을

----- 담

배부담금을-----

⑥ -----
 -- 국민건강증진부
담금-----제
5항-----
 -----국
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부
담금에-----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u>부담금</u>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생략) 제23조의2(<u>부담금</u>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부담금</u>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u>조</u>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 ----- ----- -----. ⑥ ----- ----- ----- ----- -----<u>담배부담금</u>----- ----- -----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u>담배부담금</u>의 납부담보) ① -----<u>담배부담금</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⑦ ----- -----<u>제6항</u>----- ----- ----- ----- -----<u>국민건강증진부담금</u>----- ----- ----- -----. ⑦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3조의2(<u>담배부담금</u>의 납부담보) ① ----- ----- ----- ----- -----<u>제</u> -----<u>조업자등</u>----- ----- -----. ② ----- ----- -----
---	--	---

받은 <u>제조자 및 수</u> <u>입판매업자가</u> 담보 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u>특별시장·광역</u> <u>시장·특별자치시장·</u> <u>특별자치도지사·시</u> <u>장·군수 및 세관장</u> <u>에게 담배의 반출</u> <u>금지를</u>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u>담배의 반출금지</u> 요구를 받은 <u>특별</u> <u>시장·광역시장·</u> <u>특별자치시장·특</u> <u>별자치도지사·시</u> <u>장·군수 및 세관</u> <u>장은</u>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23조의3(<u>부담금</u> 부 과·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u>부담금</u>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u>담배부담금</u> 부과·징수의 협조) ① ----- --<u>담배부담금</u>----	--<u>제조업자등이</u>-- ----- ----- ----- ----- <u>시·도지사, 시장·</u> <u>군수·구청장 및</u> <u>세관장에게 담배</u> <u>또는 가당음료</u>--- ----- ----- ----- -----. ③ -----<u>담배</u> <u>또는 가당음료</u>--- -----<u>시·</u> <u>도지사, 시장·군수</u> <u>·구청장 및 세관</u> <u>장</u>----- ----- ----- -----. 제23조의3(<u>국민건강증</u> <u>진부담금</u> 부과·징 수의 협조) ① --- -----<u>담배</u> <u>부담금</u>-----
---	--	--

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②·③ (생 략)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가당음료부 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 는 수입판매업자(이 하 “가당음료제조업 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가당음료 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부담금 (이하 “가당음료부 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첨가당 함량이 1 00밀리리터 당 5 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 터 당 225원	
	2. 첨가당 함량이 1	

00밀리리터 당 8

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 당 300원

② 가당음료제조업

자등은 매월 1일부

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가당음료의

용량과 산출된 가당

음료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당음

료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

시하여 해당 가당

음료제조업자등에

게 납부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④ 가당음료제조업

자등은 제3항에 따

른 납부고지를 받
은 때에는 납부고
지를 받은 달의 말
일까지 이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은 가당음료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가당음료부
담금을 내지 아니
하는 경우 납부기
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하며, 체납된 가
당음료부담금에 대
해서는 「국세기본
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
은 자가 그 기간

<신 설>

이내에 가당음료부
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5(가당음료부
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가당음료부담금
의 납부 보전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가
당음료제조업자등에
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가당음료제조
업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
나 요구분의 일부
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 시장 · 군수 및
세관장에게 가당음
료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당음료의 반출금
지 요구를 받은 특
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세
관장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23조의6(가당음료부
담금 부과 · 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당음료부
담금의 부과 · 징수
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u>받은 중앙행정기관</u> <u>· 지방자치단체 그</u> <u>밖의 관계 기관 ·</u> <u>단체 등은 특별한</u> <u>사유가 없는 한 이</u> <u>에 응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u> <u>의 규정에 따라 보</u> <u>건 복지부장관에 게</u> <u>제출되는 자료에</u> <u>대하여는 사용료 ·</u> <u>수수료 등을 면제</u> <u>한다.</u>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 용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12. (생 략) ② · ③ (생 략)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비만 및 만성질</u> <u>환 등에 대한 예방</u> <u>및 관리 · 연구사업</u> 13. <u>지역 · 필수 · 공</u> <u>공의료사업</u>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

[illegible]

2. 주요 검토 사항

□ 비만 및 식이 관련 비감염성질환(NCD)¹⁾은 설탕·소금·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 보건 우려로 대두되고 있음. 가당음료²⁾는 유리당(free sugar)³⁾ 섭취의 주요 공급원이나 영양적 부가가치는 낮음. 반면에 설탕이 포함된 고형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위험을 더 크게 유발하여 과다체중·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치아우식,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킴.⁴⁾

□ 질병관리청의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시·군·구별 비만율의 중앙값이 2015년에 26.3%이었으나 2024년에는 34.4%로 높아져 2015년 대비 30.8% 증가하였음. 또한 「2024 국민건강통계 추이」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015년에 34.1%였으나 2024년 37.9%로 높아져 2015년 대비 11.1% 증가함.

< 2015-2024 전국 비만율(자가보고) 및 비만 유병률 추이 >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만율* (자가보고)	26.3	27.9	28.6	31.8	-	31.3	32.2	32.5	33.7	34.4
비만유병률**	34.1	35.5	34.8	35.0	34.4	38.4	37.2	37.2	37.1	37.9

*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 2024 국민건강통계 추이. 질병관리청

1) Non-communicable diseases

2) WHO에 따르면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는 ‘유리당 (free sugars)’을 함유한 모든 비알코올성 음료를 의미하며, 탄산·비탄산 청량음료, 과·채 주스 및 음료, 벡타, 농축액·분말, 향첨가수·비타민워터, 에너지/스포츠음료, RTD(ready-to-drink) 차·커피, 가당 우유 및 우유기반 음료(식물성 대체유 포함) 등을 포함함.

3) 유리당은 식품의 세포 구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빠져나와 있는 당으로 체내에 빨리 흡수되고 혈당스파이크를 일으키며, 포만감을 주지 않으면서 칼로리만 높임.

4)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report on the use of sugar-sweetened beverage taxes, 2025, p.1

□ WHO는 1일 당류 섭취량을 50그램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과일, 우유, 원재료성 식품, 가공식품 등 전체 식사를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57.4그램으로 WHO의 권고 수준을 웃돌고 있음.

○ 특히 10~18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64.7그램을 섭취해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더욱 심각함.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경우 상당 부분 가당음료를 통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고⁵⁾ 음료 섭취자의 당류 과잉 섭취자 비율은 미섭취자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당 1일 섭취량('24년) 〉

(단위: g)

구분	전체	1-9	10-18	19-29	30-39	40-49	50-59	60-69	70+
전체	57.4	54.7	64.7	57.5	55.9	54.5	62.7	57.1	50.2
남자	59.9	57.6	65.7	59.2	59.2	57.2	65.5	57.0	56.7
여자	54.9	51.7	63.6	55.6	52.1	51.8	59.9	57.1	45.6

* 출처 :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25년)

* 섭취량 :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당 섭취량의 합

* 전체: 1세 이상 표준화 값

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18~2022)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의 주공급원은 음료류(32.2%)였고 그 다음으로 과자류·빵류 및 떡류(15.7%) 등 순이었음(식약처 보도자료,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2024. 5. 30.).

< 음료 섭취 여부에 따른 당 과잉 섭취자 분율(%) >

	전체		남자		여자	
	미섭취자	섭취자	미섭취자	섭취자	미섭취자	섭취자
1세이상	10.2	18.0*	7.1	14.3*	13.0	21.8*
연령(세)						
1-9	14.5	32.7*	13.2	33.8*	15.8	31.4*
10-18	6.9	26.5*	2.8	25.1*	12.0	27.8*
19-29	6.8	19.2*	4.3	15.1*	9.7	23.6*
30-39	7.8	14.1*	4.8	11.7	11.1	16.7
40-49	8.7	15.8*	9.5	12.2	7.9	19.5*
50-59	11.3	17.1*	4.0	10.8*	18.1	23.6
60-69	12.1	18.3*	8.7	12.9	14.9	23.2*
70+	11.3	17.1*	10.2	15.4	12.0	18.5*

※ 미섭취자, 하루 동안 음료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 섭취자, 하루동안 음료를 섭취한 사람
 ※ 당 과잉 섭취자 분율 : 당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¹⁾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를 초과한 분율
¹⁾ (당 섭취량(g) × 4kcal/g) / [(지방 섭취량(g) × 9kcal/g) + (탄수화물 섭취량(g) × 4kcal/g) + (단백질 섭취량(g) × 4kcal/g)]
 ※ 2022, 2023년 자료 통합
 * p-value < 0.05, 음료 섭취자와 음료 미섭취자 간 당 과잉 섭취자 분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수준
 자료 : 질병관리청

□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 신체활동 증진, 고도비만 치료 지원 등에 대한 기준⁶⁾·홍보·교육을 강화하거나 당류 함량 등급별 경고표시, 경고문구의 의무화나 마케팅 제한 등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6)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 당류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시 첨가된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포함되며, 특히 주요급원인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

□ 설탕세(Sugar Tax)⁷⁾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 (Sugary Drink Tax)로 불림.

○ 가장 오래된 설탕세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하여 왔고,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음.

○ 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 이상이 가당음료에 1종 이상의 부담금 또는 개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음.⁸⁾

대부분 가당음료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당⁹⁾인 인공 감미료 함유음료까지 과세하는 국가도 85개국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세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Specific Tax) 방

7) 통상적으로 ‘설탕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Sugar Tax의 번역으로 설탕세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설탕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국세 또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8) 설탕세 도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층형 종량세 형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9) 전통적 당류(설탕 등)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감미료를 의미하며,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와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천연감미료로 구분할 수 있음.

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 함량(Sugar Content)에 따라 세율 구간을 차등화하여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이며,

가당음료 과세를 통한 세입 규모는 대략 GDP 대비 0.01%~0.1%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 용도를 보건 분야로 지정하는 국가는 프랑스 등 10개국 수준임.¹⁰⁾

〈OECD 회원국 SSB(Sugar-Sweetened Beverage) 세금 부과 현황〉

구분	국가명	부과 기준 ¹¹⁾	세율	용도	과세 품목				
					탄산 음료	에너지 음료	과일주스 (100%↓)	대체 당	생수
유럽	네덜란드	종량세	단일	보통세	○	○	○	○	X
	라트비아	종량세	차등	보통세	○	○	X	○	X
	벨기에	종량세	단일	보통세	○	○	X	○	X
	핀란드	종량세	단일	보통세	○	○	○	○	○
	아일랜드	종량세	차등	보통세	○	○	X	X	X
	튀르키예	종가세	차등	보통세	○	○	○	○	X
	영국	종량세	차등	부담금	○	○	○	X	X
	프랑스	당함량형 ¹²⁾	차등	목적세	○	○	○	○	X
	헝가리	종량세	차등	목적세	○	○	○	○	X
	폴란드	혼합형	차등	목적세	○	○	○	○	X
	포르투갈	종량세	차등	목적세	○	○	○	○	X
북 남 미	멕시코	종량세	단일	보통세	○	○	○	○	X
	코스타리카	종량세	단일	보통세	○	○	○	○	○
	콜롬비아	종량세	차등	보통세	○	○	○	X	X
	칠레	종가세	차등	보통세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10) 국회예산정책처,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2026. 2. 27.

11) WHO(2025) 분류 기준에 따름(Ad valorem, Volume-based specific, Sugar-content-based specific, Mixed)

□ 설탕세 부과 방식은 ① 거래가치(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 excise tax), ② 일정 용량(ml, ℓ 등) 또는 설탕 함량(g 등)에 비례해 금액으로 부과하는 종량세(volume-based specific), ③ 위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결합하여 부과하는 혼합세 등이 있음.

○ 종가세는 명목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액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저가 제품의 세부담이 작아져 저가 대체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과세표준(가치) 조작 등에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종량세는 모든 제품에 동일 단가가 적용되어 저가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기업의 가격조작 여지가 작아 공중보건 관점에서 선호됨.¹³⁾

○ 한편, 설탕세의 성격에 따라 특정 공익 목적의 비용 부담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원인제공자에게 부담금(Levy)을 부과하는 방식과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으로 주로 제품 자체에 과세(Tax)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개정안은 설탕세 부과 방식중 종량세 및 부담금 부과 방식을 도입하여 가당음료 제조업자 등에게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류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12) WHO는 당함량형 과세국으로 8개국 제시(프랑스, 룩 제도, 보츠나와, 모리셔스, 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위의 자료, p.7

- 개정안별로 가당음료의 정의,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기준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등은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김선민의원안은 가당음료를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로 정의하면서, 가당음료 100밀리리터당 첨가당의 양(g)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첨가당의 양이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첨가당의 양이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당 300원을 부과함(2단계 차등, 누진 부과 요율 구조). 아울러, 부담금 신설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이수진의원안은 가당음료를 “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가당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kg)을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00리터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8,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부담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됨(9단계 차등, 누진 부과 요율 구조). 부담금 신설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별 가당음료의 정의, 부담금 부과 기준 등 비교 >

구 분	가당음료 정의	부과기준		부담금 (김선민의원안 : 1ℓ 당) (이수진의원안 : 100ℓ 당)	사용처
		가당음료 의 양	첨가당 함량		
김선민 의원안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	가당음료 100㎖ 당 첨가당의 함량(g)	5 이상 8 미만	225원	-비만 및 만성질환 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 -지역·필수·공공의 료사업
			8 이상	300원	
이수진 의원안	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	가당음료 100ℓ 당 첨가당의 함량(kg)	1 이하	1,000원	-
			1 초과 3 미만	2,000원	
			3 초과 5 미만	3,500원	
			5 초과 7 미만	5,500원	
			7 초과 10미만	8,000원	
			10 초과 13 미만	11,000원	
			13 초과 16 미만	15,000원	
			16 초과 20 미만	20,000원	
			20 초과	2,8000원	

- 참고로, 330㎖ 콜라에 적용되는 세율 수준은 김선민의원안의 경
우 약 99원, 이수진의원안은 약 36원이며, 해외의 경우 영국은
약 169원, 프랑스는 약 203원, 멕시코는 약 85원 수준임.

< 콜라에 적용되는 세율 수준 비교 >

음료	금액	김선민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참고: 해외 사례 ^{주1)}			
				영국	프랑스	멕시코	태국
330ml 콜라 당함량 10.8g/100ml	적용요율	300원/ℓ	11,000원/100ℓ	£0.259/ℓ	€0.356/ℓ	3.08 MXN/ℓ	5 THB/ℓ
	부담금(세액)	약 99원	약 36원	약 169원	약 203원	약 85원	약 77원
	소매 판매가액	약 1,000~2,000원		약 2,975원	약 2,164원	약 1,260원	약 752원

주:1) 적용 환율(2026.2.11.): 1GBP 1,983원, 1EUR 1,731원, 1MXN 84원, 1THB 47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2026.2.27.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대상은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임. 첨가당의 주요 기준이 되는 당류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가당음료에 주로 첨가되는 형태이며 구조에 따라 단당류·이당류·다당류로 나뉨.

○ 이에 따라 당류이긴 하나 체내에서 거의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는 희소당인 알룰로스¹⁴⁾, 비당류 고감미(高甘味) 감미료인 스테비아¹⁵⁾ 같은 천연 감미료, 아스파탐¹⁶⁾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비당류 감미료는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당의 종류 >

분류	구성	소화	혈당	종류
단당류	1개 단당	직접 흡수	급상승	-포도당 -과당 : 옥수수 시럽 -갈락토오스 ☞ 물에 잘 녹고 단맛이 강함. ☞ 포도당은 혈당 직접 상승, 과당은 간에서 주로 대사
이당류	2개 단당 결합	효소로 단당류 분류 후 흡수	빠름	-설탕:포도당+과당 -엿당:포도당+포도당 -젖당:포도당+갈락토오스
다당류	단당의 사슬	여러 효소로 천천히 분해	안정	-녹말:식물의 저장형태 -글리코겐:동물의 저장형태 -셀룰로스:식물 세포벽 구성

14) 알룰로오스는 구조상 당류이지만, 대사 특성상 비당류 감미료와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 물질

15) 국화과 식물인 *Stevia rebaudiana* 잎에서 추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16) 합성 비당류 감미료로 아미노산(아스파르트산 + 페닐알라닌)으로 이루어진 디펩타이드 유도체, 설탕 대비 약 200배 단맛, 혈당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음

□ 개정안과 같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선협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가당음료의 가격 인상¹⁷⁾으로 소비량이 감소(6~20%)하여 당뇨 및 비만 유병율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됨. 아울러 제조자 등으로 하여금 당류 저감제품의 생산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영국의 경우 2018년부터 ‘청량음료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시행한 이후 당 섭취량이 약 30% 감소(인당 4.6g/일)하였고, 음료업체 레시피 변경으로 전체 탄산음료 설탕 함량은 21.6% 감소하였음. 2015년 설탕세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탄산음료 등에 20온스 당 20센트의 추가세금을 부과하여(추가 세금의 47%가 소비자에게 전가)¹⁸⁾ 시행 1년 후 가당음료 판매량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당음료 세금(부담금) 도입에 따른 건강개선 등 효과〉

도입 국가	주요 결과
영국	·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약 30% 감소 (인당 4.6g/일) · 음료업체 레시피 변경(Reformulation)으로 전체 탄산음료 설탕 함량 21.6% 감소
헝가리	· 도입 후 3년간 고당 제품 소비 감소
포르투갈	· 고당함량음료 소비 6% 감소
멕시코	· 청량음료 고·중소비 집단에서의 소비량이 6%~8% 감소
미국 필라델피아	· 설탕세 도입 후 과세 음료 판매량이 38.9% 감소
미국 버클리	· 설탕세 시행 1년 후 가당음료 판매량 9.6% 감소
미국 시애틀	· 가당 음료 판매 약 20% 감소했으며, 아동 비만율이 비과세 지역보다 감소

자료 : 보건복지부

17) WHO도 2025년 7월 ‘3 by 35’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담배·알코올·당류음료 등 3대 건강유해 제품의 실질가격을 2035년까지 최소 50% 인상하도록(각국의 맥락을 고려하되) 세금 인상을 촉진하는 글로벌 노력을 시작한다 있음.

18)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6. 2. 12. p.25

-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부담 감소 등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건정성을 확충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과 비만, 만성질환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성인의 비만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추가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적정 부담요율 설계와 목적에 부합하며 투명하게 운용되는 부담금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가격정책과 함께, 식습관 개선 등 관련 보건교육, 대체당 가이드라인, 당 함량 표시 개선 등 비가격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¹⁹⁾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의료비	31,820	54,252	59,345	62,966	69,460	73,969	88,354
간병비	2,231	5,512	4,943	4,882	4,894	4,555	4,577
교통비	617	1,328	1,431	1,494	1,560	1,610	1,688
직접비 소계	34,668	61,091	65,719	69,342	75,914	80,133	94,619
생산성 손실·저하액	8,434	36,981	39,298	40,202	42,848	44,490	47,842
조기 사망비	8,015	12,534	12,859	12,656	13,101	13,904	13,921
간접비 소계	16,449	49,515	52,157	52,858	55,949	58,394	61,763
계	51,117	110,606	117,876	122,200	131,864	138,527	156,382

자료 : 보건복지부

19)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자료

□ 다만, 가당음료부담금 도입은 부과의 필요성과 합목적 판단 이전에 일상적이고 대규모로 소비되는 당류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금이 제조자 등에게 부과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되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고²⁰⁾, 소비억제를 통한 행태변화 유도라는 교정적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단순 재원 조달 기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²¹⁾

○ 따라서, 가당음료부담금은 국민 부담 증가 측면에서의 제도 수용성과 함께 부과대상, 목적, 부과방식 및 용도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궐련 20개비당 841원 등 담배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함. 부과된 담배부담금은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금연교육, 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20) 이에 대해 제조자가 부담금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첨가당의 함량을 낮춘다면 저소득층은 건강하면서도 저렴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물가상승이나 소득 역진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21)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자료

< 최근 5년간 부담금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1	'22	'23	'24	'25
부과액	3,122,612	3,186,529	3,360,260	3,329,034	3,049,540
수납액	2,962,962	2,824,994	2,973,665	3,156,595	2,877,124

자료 : 보건복지부

□ 추가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른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임.

○ 개정안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에 해당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동 별표 제12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김선민의원안은 현행법 제23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개정하고, 제23조의4를 신설하여 가당음료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선민의원안에 따른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당음료부담금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 당류 섭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과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사용처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소아·청소년의 비만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적극 공감하나 재정적 정책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국가별 가당음료 과세제도의 세부 운영 사례 비교

국가 (도입연도)	영국 (2018)	프랑스 (2012)	멕시코 (2014)	태국 (2017)
명칭	청량음료산업부담금 ¹⁾	가당음료기여금	특별소비세 내 가당음료세 항목	가당음료소비세
주요 과세대상	설탕 첨가 비알코올음료	비알코올음료 (설탕, 인공감미료 첨가)	설탕 첨가 비알코올음료 ²⁾	비알코올음료 (설탕, 인공감미료 첨가)
주요 비과세 대상	당 5g 미만/100ml, 100% 과채주스, 우유, 무가당 두유, 순수 물	100% 과채주스, 우유, 무가당 두유, 순수 물	100% 과채주스, 우유, 무가당 두유, 순수 물	당 6g 미만/100ml, 100% 과채주스, 우유, 무가당 두유, 순수 물
과세 방식	총량세	총량세	총량세	종가세와 총량세
과세 표준	가당음료의 용량(ℓ)	가당음료의 용량(ℓ)	가당음료의 용량(ℓ)	종가세: 가격 총량세: 용량
세율 구조	당 함량 구간별 차등, 누진세율	당 함량 구간별 차등, 누진세율	음료 용량, 단일세율	종가세: 단일세율 총량세: 당 함량별 차등
세율 (2026년)	5~8g/100ml: £0.194/ℓ ≥ 8g/100ml: £0.259/ℓ	≤5g/100ml: €0.04/ℓ, 5~8g/100ml: €0.21/ℓ, ≥ 8g/100ml: €0.356/ℓ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별도: €0.035/ℓ	3.08 MXN/ℓ *매년 물가반영 자동 인상	(종가세) 인공감미료 첨가음료, 에너지음료 등: 14%, 주스류: 10% (총량세) 가당음료 6~8g/100ml: 1 THB/ℓ 8~10g/100ml: 3 THB/ℓ, ≥10g/100ml: 5 THB/ℓ
세입 규모 (2022)	357백만GBP (GDP대비 0.014%)	497백만EUR (GDP대비 0.019%)	34,247백만MXN (GDP대비 0.116%)	자료 확인 불가
용도 지정 여부	비지정(국가 일반회계) *(비공식)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보장기금 (건강보험 포함)	비지정(국가 일반회계)	비지정(국가 일반회계)

주: 1) 영국은 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조세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2) 멕시코는 음료 외에 비필수 고열량 가공식품(≥275kcal/100g, 비스킷, 초콜릿, 사탕, 잼, 등)에 대해서도 종가세 8% 세율 적용

자료: 김윤희·박연서, "한국의 건강세 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설계 방안: 감미료음료 및 건강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3호(2025)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2026.2.27.